

여야 한다.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 (대) 퇴직연금운용수익 ×××
지급수수료 ××× (영업외수익)

(4) 매년 퇴직연금추가불입액의 결정

① 기준 적립금 해당액의 산출

당기말 퇴직급여추계액 × 60% 이상

② 추가 불입전 적립금액 평가

ㄱ. 기초 적립금평가액

ㄴ. 당기 퇴직급여지급액

ㄷ. 당기 운용수익증가액

ㄹ. 기말 적립금평가액(ㄹ = ㄱ - ㄴ + ㄷ)

③ 추가불입액의 산출

① - ②

(5) 종업원이 퇴사하는 경우

1) 일시금을 선택한 경우

종업원이 퇴직시 일시금의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회사와 DB운용업자가 각각 지급해당금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한다. 이때 가장 유의할 점은 DB에서 운용되고 있는 적립금총액에서 종업원의 퇴직급여해당액이 전액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상당수의 기업이 DB적립금을 추계액의 100%로 적립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종업원의 퇴직급여를 DB적립금에서 전액 지급하면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이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업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DB운용사업자는 전기의 재무건전성 평가기준일 현재 종업원의 퇴직급여추계액에 전기의 적립비율(최소한 추계액의 60% 이상)을 곱한 금액만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차액은 회사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DB에서의 퇴직급여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이므로 회사에서 퇴직급여전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 차액을 지급하면 된다.

(차) 퇴직급여총당금 ×××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주1)}
현금 및 현금등가물 ×××
예수금 ×××^{주2)}

주1) 전기말 퇴직급여추계액 × DB적립비율

주2) DB에서의 퇴직급여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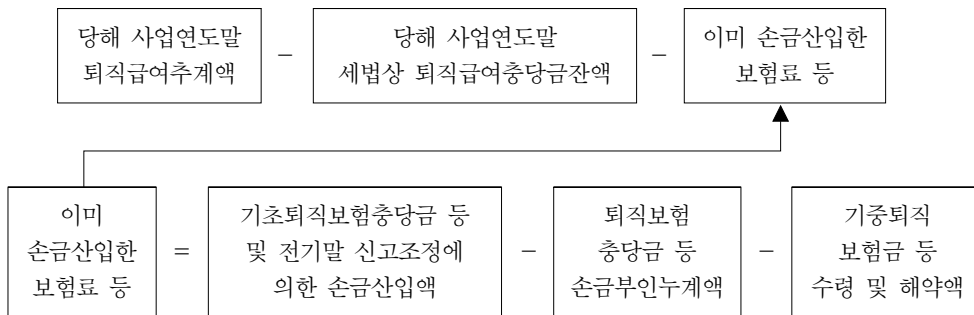
2) 연금을 선택한 경우

- ㄱ. 회사에는 어떤 제도의 초과자산을 다른 제도의 부채를 결제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고 실제로 사용할 의도도 있다.
- ㄴ. 회사에는 어떤 제도의 초과자산을 다른 제도의 부채를 결제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3. 법인세법상 처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불입한 금액은 기존의 퇴직보험료와 동일하게 다음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한다.(법령 44의2 ③)

(1) 퇴직급여추계액기준 손금한도



1) 당해 사업연도말 퇴직급여추계액

이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근무하는 임원 및 사용인이 일시에 퇴직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법인의 정관,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퇴직급여해당액을 말한다.

2) 당해 사업연도말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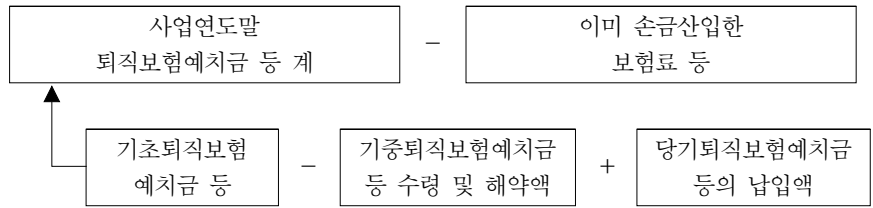
이는 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기말잔액에서 세무상 손금부인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장부상 기말잔액과 손금부인누계액은 당해 사업연도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및 부인액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퇴직보험료 및 퇴직연금과 관련된 세무조정을 하기 이전에 퇴직급여충당금(내부적립)과 관련된 세무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3)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등

이는 기초퇴직보험충당금 잔액 및 전기까지 세무조정시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된 퇴직보험료 및 퇴직연금(이하 '퇴직보험료 등' 이라 한다)의 합계액에서 퇴직보험료 등의 세무상 손금부인누계액과 당기 중에 퇴직보험금 등의 수령 및 해약액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법칙 24 ②) 이는 전

기까지 결산조정 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산입된 보험료 중 당기말까지 퇴직급여지급 등에 사용하고 남은 보험료 등을 말하는 것이다.

(2) 퇴직보험예치금 등 기준 손금한도



1) 사업연도말 퇴직보험예치금 등 계

이는 기초퇴직보험예치금 및 퇴직연금운용자산(이하 '퇴직보험예치금 등'이라 한다) 등 잔액에서 기중에 퇴직보험예치금 등의 수령 및 해약액을 차감하고 당기에 불입한 퇴직보험료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즉 당기말 현재 보험회사에 불입한 퇴직보험료 등의 총잔액을 말한다.

2)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등

'(1)의 3)'과 동일하다.

중점사항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퇴직보험 등)의 유효기간

2005. 12. 1. 현재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회사에 대하여는 2010. 12. 31. 까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 그러므로 법인세법에서도 2010. 12. 31. 까지 불입되는 퇴직보험료 등에 대하여는 상기 3.의 한도내에서 손금산입된다.

2005. 12. 1. 이후에는 퇴직보험료 등의 신규가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2005. 12. 1. 현재 이미 가입되어 있는 회사들은 종전과 동일하게 신입사원들에 대하여도 퇴직보험 등의 가입이 2010. 12. 31. 까지 허용된다.

4. 소득세법상 처리

(1) 일시금을 선택한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되어 회사에서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소령 203 ⑤)

(2) 연금을 선택한 경우

연금소득에 해당되어 연금수령시 DB사업자가 연금소득으로 5% 원천징수한다. 연금소득이 연 6백만원을 초과시는 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

부하여야 한다.

(3) 개인퇴직계좌(IRA)로의 입금을 신청한 경우

- ① 과세이연에 해당되어 퇴직소득 등으로 보지 않는다.
- ② 종업원은 회사에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퇴직소득이연명세서와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IRA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퇴사일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③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 ① 기존의 퇴직급여제도에서 퇴직급여중간정산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개인퇴직계좌(IRA)로 입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의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 ② DB제도에서는 중간정산의 개념이 도입될 수 없다. 이는 중도인출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단, DB가입 후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퇴직일시금을 지급하고 이는 중간정산으로 간주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중단 등을 결정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고 추후 다시 DB를 가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이때 중간정산 대상기간의 산정은 다음과 같다.

ㄱ. DB에서 수령한 퇴직일시금

ㄴ. 중단일 등 시점의 평균임금

ㄷ. 중간정산 대상기간 = ㄱ ÷ ㄴ

③ 개인형 IRA제도에서의 개인부담금 소득공제여부

DC연금제도에서는 근로자 개인이 자금을 불입하는 경우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상 연금저축소득공제와 합산하여 300만원까지 한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형 IRA제도에서는 개인부담금이 없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반면 기업형 IRA제도(10인 이하의 사업장)는 기본적으로 DC연금제도와 동일하므로 개인부담금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④ 개인형 IRA제도에서의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

개인형 IRA제도는 근로자 본인의 자유의사로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수령요건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이 적용배제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일단 가입 후에는 55세 이전에는 연금수령은 물론 일시금수령도 불가능한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중도인출은 가능하므로 IRA제도 가입시 신중하게 가입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⑤ 2006년도에 퇴직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방안

ㄱ. DB 및 DC연금제도에 소급가입한 경우

2005년 이전 근무분에 대하여 2006년 이후에 소급가입하는 경우에는 그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이고 근로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신청시 연금의 수령이 가능하다.

ㄴ. IRA제도에 가입한 경우

IRA제도에 가입하고 근로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연금신청시 연금의 수령이 가능하다.

중점사항 퇴직일시금과 연금의 수령형태

1. 퇴직급여제도

(1) 일시수령을 선택한 경우

회사가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2) 타 회사의 DC연금제도로 이체를 신청한 경우

- ① 과세이연에 해당되어 퇴직소득 등으로 보지 않는다.
- ② 종업원은 회사에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퇴직소득이연명세서와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DC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퇴사일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③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IRA제도로 입금을 신청한 경우

- ① 과세이연에 해당되어 퇴직소득 등으로 보지 않는다.
- ② 종업원은 회사에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퇴직소득이연명세서와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IRA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퇴사일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③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정급여형연금제도

(1) 일시금을 선택한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되어 회사에서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소령 203 ⑤)

(2) 연금을 선택한 경우

연금소득에 해당되어 연금수령시 DB사업자가 연금소득으로 5% 원천징수한다. 연금소득이 연 6백만원을 초과시는 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개인퇴직계좌(IRA)로의 입금을 신청한 경우

- ① 과세이연에 해당되어 퇴직소득 등으로 보지 않는다.

- ② 종업원은 회사에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퇴직소득이연명세서와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IRA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퇴사일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③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확정기여형연금제도

(1) 일시금수령을 선택한 경우

DC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이때 회사는 DC연금사업자에게 근로자퇴직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금을 신청한 경우

연금소득에 해당되어 DC연금사업자가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3) 타회사의 DC연금제도로 이체를 신청한 경우

- ① 과세이연에 해당되어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② 퇴직자는 DC연금사업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DC연금사업자는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와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타회사 DC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DC연금사업자는 퇴사일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③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IRA제도로 입금을 신청한 경우

- ① 과세이연에 해당되어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② 퇴직자는 IRA연금사업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IRA연금사업자는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와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타회사 IRA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IRA연금사업자는 퇴사일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③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개인퇴직계좌제도

(1) 일시금수령을 선택한 경우

IRA연금사업자가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2) 연금수령을 선택한 경우

IRA연금사업자가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예제 신철법인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B) 가입시

1. 자료 I

- (1) 승수(주)는 2005. 12. 1. 신설됨.(회계연도는 1. 1부터 12. 31까지임)
- (2) 2005. 12. 1. A, B, C가 승수(주)에 입사함
- (3) 2006년도에 승수(주)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기로 노사합의함

- (4) 승수(주)는 퇴직연금의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윤종보험(주)를 연금사업자로 선정하였다.
- (5) 퇴직연금규약에 연금수령기간은 10년으로 정하였다.
- (6) 승수(주)와 윤종보험(주)는 퇴직연금부담금을 매년 12월 30일에 불입하며 결산일 현재 승수(주)의 퇴직급여추계액의 60% 해당금액이 적립되도록 하였다.
- (7) 승수(주)가 부담해야 하는 윤종보험(주)에 대한 수수료율은 1.5%이다.

2. 자료 II

(1) 2006. 12. 31. 현재 퇴직급여추계액

A : 2,000,000

B : 3,000,000

C : 5,000,000

10,000,000

(2) 2006. 12. 30. 퇴직연금불입액 : 6,000,000(수수료 90,000 별도지급)

(3) 2006. 12. 31. 회계처리

(차) 퇴 직 급 여 10,000,000 (대) 퇴 직 급 여 총 당 금 10,000,000

(차) 퇴 직 연 금 운 용 자 산 6,000,000 (대) 현 금 및 현 금 등 가 물 6,090,000
 지 급 수 수 료 90,000

(4) B/S상의 표시

퇴직급여총당금 10,000,000

퇴직연금운용자산 6,000,000 4,000,000

3. 자료 III

(1) 2007. 6. 30. A가 퇴사하였고 일시금해당 퇴직급여액은 3,000,000원 이다.

(차) 퇴 직 급 여 총 당 금 3,000,000 (대) 퇴 직 연 금 운 용 자 산 1,200,000 ^{주1)}
 현금 및 현금등가물 1,707,600
 예 수 금 92,400 ^{주2)}

주1) 근로자 A가 퇴사시 퇴직급여해당액 3,000,000원을 퇴직연금운용자산에서 전액 지급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직전연도 A의 퇴직급여추계액에 회사전체의 적립비율인 60%를 곱한 금액만 윤종보험(주)가 근로자 A에게 지급한다.

주2) DB의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승수(주)에 있다. 그러므로 승수(주)가 A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퇴직소득세 해당액을 원천징수하여 차감지급하게 된다. 만일 적립비율이 높아 연금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퇴직소득세 해당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세금해당액을 차감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세금해당액은 회사로 자금을 대체하여 회사가 원천
세해당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begin{aligned} \text{퇴직소득과세표준} &= 3,000,000 - (1,350,000 + 600,000) \\ &= 1,050,000 \end{aligned}$$

$$\begin{aligned} \text{산출세액} &= \frac{1,050,000}{2} \times 8\% \times 2 \\ &= 84,000 \end{aligned}$$

$$\begin{aligned} \text{총원천세액} &= 84,000 + 8,400 \\ &= 92,400 \end{aligned}$$

(2) 2007. 12. 31.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B : 5,000,000

C : 8,000,000

D : 2,000,000 (2006.4.1 입사)

15,000,000

(3) 2007. 12. 30. 현재 퇴직연금운용자산평가액 5,500,000(적립금운용증가
액은 800,000이며, 운용수수료는 100,000이다)

기초 퇴직연금운용자산 6,000,000

- 당기 퇴직급여 지급액 1,200,000

+ 당기 운용증가액 700,000

= 기말 퇴직연금운용자산 5,500,000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700,000 (대) 퇴직연금운용수익 800,000
지급수수료 100,000 (영업외수익)

(4) 2007. 12. 30. 퇴직연금운용자산 추가불입액 3,500,000

기말 퇴직급여추계액 × 적립비율 = 15,000,000 × 60% = 9,000,000

- 퇴직연금운용자산평가액 5,500,000

= 퇴직연금운용자산추가불입해당액 3,500,000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3,500,000 (대) 현금 및 현금등가물 3,552,500
지급수수료 52,500

(5) 2007. 12. 31.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 8,000,000^{주)} (대) 퇴직급여충당금 8,000,000

주) 당기말 추계액 15,000,000 - 전기말 추계액 10,000,000 + 당기 지급액
3,000,000

= 당기 설정액 8,000,000

(6) B/S상 표시

퇴직급여충당금 15,000,000

퇴직연금운용자산 9,000,000 6,000,000

4. 세무조정

(1) 2006년

1) 1년 이상 근속한 A, B, C에 대한 총급여액 60,000,000원 전제

2) 퇴직급여총당금에 대한 세무조정

① 한도액 : $\text{Min}(\text{ㄱ}, \text{ㄴ}) = 4,000,000$

ㄱ. 총급여액 기준

$$60,000,000 \times 1/10 = 6,000,000$$

ㄴ. 추계액 기준

$$10,000,000 \times 40\% = 4,000,000$$

② 세무조정

손금불산입·퇴직급여총당금·6,000,000·유보

3) 퇴직연금에 대한 세무조정

손금산입·퇴직연금·6,000,000·△유보

(2) 2007년

1) 당기 퇴직급여지급에 대한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퇴직연금·1,200,000·유보

· 손금산입·퇴직급여총당금·1,200,000·유보



자주

2007년부터 퇴직연금제의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급여총당금의 손금산입한도가 다음과 같이 축소된다.

1. 총급여액 기준

$$\text{총급여액}^{(주)} \times 5\%$$

주) 회사는 퇴직급여규정에 1년 미만 퇴직자도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1년 미만 근속자의 총급여도 포함함

2. 추계액 기준

$$\text{추계액} \times 35\%^{(주)}$$

주) 2008년까지는 35%가 적용되며 2009년부터는 30%가 적용됨

2) 퇴직급여총당금에 대한 세무조정

① B, C, D에 대한 총급여액 80,000,000원 전제

② 한도액 : $\text{Min}(\text{ㄱ}, \text{ㄴ}) = 3,050,000$

ㄱ. 총급여액 기준

$$80,000,000 \times 5\% = 4,000,000$$

ㄴ. 추계액 기준

$$15,000,000 \times 35\% - (10,000,000 - 6,000,000 - 1,800,000^{(주)}) \\ = 3,050,000$$

주) 한도액 계산시 당기 퇴직급여지급액은 회사에서 A에게 직접 지급하는

1,800,000을 말함

③ 한도초과액

8,000,000 - 3,050,000
= 4,950,000

④ 세무조정

손금불산입·퇴직급여충당금4,950,000·유보

3) 퇴직연금에 대한 세무조정

① 한도액

추계액 15,000,000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인정 5,250,000^{주1)}
- 당기 퇴직연금불입전 기손금산입액 4,800,000^{주2)}
= 4,950,000

주1) 당기말 퇴직급여충당금잔액 15,000,000 - 당기말 손금부인누계액
9,750,000

= 5,250,000

주2) 전기 퇴직연금불입액 6,000,000 - 당기 퇴직연금지급액 1,200,000
= 4,800,000

② 당기 퇴직연금불입액

운용증가액 700,000 + 당기 불입액 3,500,000
= 4,200,000

③ 세무조정

손금산입·퇴직연금4,200,000·△유보

4) 2007년도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과 목	기 초	감 소	증 가	기 말
퇴직급여충당금	6,000,000	1,200,000	4,950,000	9,750,000
퇴 직 연 금	△6,000,000	△1,200,000	△4,200,000	△9,000,000

예제 기준법인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 가입시 : 소급가입한 경우

1. 자료 I

- (1) 승수(주)는 1970. 7. 1. 설립된 법인임(회계연도는 1. 1.부터 12. 31까지임)
- (2) 승수(주)는 2005년까지 퇴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 (3) 2006년도에 승수(주)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기로 노사합의하였다. 이때 2005년도까지의 퇴직급여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기로 하였다.
- (4) 승수(주)는 연금사업자로 윤중보험(주)를 선정하였다.
- (5) 퇴직연금규약에 연금수령기간은 5년으로 정하였다.
- (6) 승수(주)와 윤중보험(주)는 퇴직연금부담금을 매년 12월 30일에 불입하며, 결산일 현재 승수(주)의 퇴직급여추계액의 60% 해당금액이 적립되도록 하였다.

$$\text{산출세액} = \frac{10,900,000}{12} \times 8\% \times 12 = 872,000$$

$$\text{총원천세액} = 872,000 + 87,200 = 959,200$$

(3) A의 나이는 57세이며 연금의 수령을 선택하였다. 퇴직연금규정상 연금수령기간은 5년이며 7,000,000씩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 2007. 12. 30. 현재 5년 만기 국공채의 시장이자율은 4%이다.

① 퇴직연금의 현재가치

2007.12.30. 2008.12.30. 2009.12.30. 2010.12.30. 2011.12.30. 2012.12.30.

$$\begin{aligned} & \frac{7,000,000}{1.04} + \frac{7,000,000}{1.04^2} + \frac{7,000,000}{1.04^3} + \frac{7,000,000}{1.04^4} + \frac{7,000,000}{1.04^5} \\ & = 6,730,769 + 6,471,893 + 6,222,974 + 5,983,629 + 5,753,489 \\ & = 31,162,754 \end{aligned}$$

② 2007. 12. 30.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충당금 30,000,000 (대) 퇴직연금미지급금 31,162,754
 퇴직급여 1,162,754

③ 2008. 12. 30. 연금지급 회계처리

(차) 퇴직연금미지급금 7,000,000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7,000,000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윤중보험(주)가 지급금액의 5%를 원천징수하며 A는 종합소득세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④ 2008. 12. 30. 퇴직연금의 현재가치

2008. 12. 30. 현재 국공채의 시장이자율은 4.5%이다.

2008.12.30. 2009.12.30. 2010.12.30. 2011.12.30. 2012.12.30.

$$\begin{aligned} & \frac{7,000,000}{1.045} + \frac{7,000,000}{1.045^2} + \frac{7,000,000}{1.045^3} + \frac{7,000,000}{1.045^4} \\ & = 6,698,564 + 6,410,109 + 6,134,076 + 5,869,929 = \\ & 25,112,678 \end{aligned}$$

(차) 퇴직급여 949,924^{주)} (대) 퇴직연금미지급금 949,924

주) 25,112,678 - (31,162,754 - 7,000,000) = 949,924

⑤ 2007. 12. 31. 퇴직급여추계액이 130,000,000인 경우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 40,000,000^{주)} (대) 퇴직급여충당금 40,000,000

주) 당기말 추계액 130,000,000 - 전기말 추계액 120,000,000 + 당기 지급액 30,000,000

$$= \text{설정액 } 40,000,000$$

(4) (3)과 동일하게 A가 연금의 수령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3)과 달리 퇴직연금

규약에 근로자가 연금수령선택시 회사가 퇴직일시금상당액으로 일시납 연금 상품을 구매하도록 되어있다.

(차) 퇴직급여충당금 30,000,000 (대) 퇴직연금운용자산 15,000,000 ^{주1)}
현금 및 현금등가물 15,000,000 ^{주2)}

주1) 직전연도 A의 퇴직급여추계액 × 적립비율 60%
= 25,000,000 × 60% = 15,000,000

주2) 퇴직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는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어 전액 지급한다.

주3) 대부분의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고 퇴직 연금사업자가 운용하는 연금상품으로 전환된다. 즉, 회사에서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과 동일한 회계처리가 발생하게 된다.

(5) (3) 및 (4)의 경우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① 원천징수

매년 지급받는 7,000,000은 연금소득에 해당되어 윤중보험(주)가 A에게 지급시 5%인 350,000원천징수와 35,000특별징수를 합한 385,000을 차감하여 지급한다.

②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ㄱ. 연금소득(총연금액)

7,000,000

ㄴ. 연금소득공제액

3,500,000 + (7,000,000 - 3,500,000) × 40% = 4,900,000

ㄷ. 연금소득금액

7,000,000 - 4,900,000 = 2,100,000

③ 종합과세

연금소득이 600만원을 초과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4. 자료 IV

(1) 3.에서 A의 퇴직은 일시금으로 지급되었다 전제함

(2) 2007. 12. 31. 현재 퇴직급여추계액

B : 40,000,000

C : 80,000,000

D : 10,000,000 (2006.4.1 입사)

130,000,000

(3) 2007. 12. 30. 현재 퇴직연금운용자산평가액 65,000,000(적립금운용증가액은 9,000,000이며, 운용수수료는 1,000,000이다)

기초 퇴직연금운용자산 72,000,000

- 당기 퇴직급여 지급액 15,000,000

+ 당기 운용증가액 8,000,000

= 기말 퇴직연금운용자산 65,000,000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8,000,000 (대) 퇴직연금운용수익 9,000,000
지급수수료 1,000,000 (영업외수익)

(4) 2007. 12. 30. 퇴직연금 추가불입액

기말 퇴직급여추계액 × 적립비율 = 130,000,000 × 60%
= 78,000,000

- 퇴직연금운용자산평가액 65,000,000

= 퇴직연금운용자산 추가불입액 13,000,000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13,000,000 (대) 현금 및 현금등가물 13,000,000

(5) 2007. 12. 31. 회계처리

(차) 퇴직급여 40,000,000 (대) 퇴직급여충당금 40,000,000

주) 당기말 추계액 130,000,000 - 전기말 추계액 120,000,000
+ 당기 지급액 30,000,000

= 당기설정액 40,000,000

(6) B/S상 표시

퇴직급여충당금 130,000,000

퇴직연금운용자산 78,000,000 52,000,000

5. 세무조정

(1) 2006년

1)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

① 한도액 : $\text{Min}(\text{ㄱ}, \text{ㄴ}) = 8,000,000$

ㄱ. 총급여액 기준

$150,000,000 \times 1/10 = 15,000,000$

ㄴ. 추계액 기준

$120,000,000 \times 40\% - (100,000,000 - 60,000,000 - 0)$
= 8,000,000

② 한도초과액

$20,000,000 - 8,000,000$

= 12,000,000

③ 세무조정

손금불산입·퇴직급여충당금·12,000,000·유보

2) 퇴직연금에 대한 세무조정

① 한도액

추계액 120,000,000 - 퇴직급여충당금손금인정액 48,000,000
= 72,000,000

② 불입액

72,000,000

③ 세무조정

손금산입·퇴직연금·72,000,000·△유보

3)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과 목	기 초	감 소	증 가	기 말
퇴직급여충당금	60,000,000	-	12,000,000	72,000,000
퇴 직 연 금	-	-	△72,000,000	△72,000,000

(2) 2007년

1) 당기 퇴직급여지급에 대한 세무조정(일시금지급에 대한 세무조정)

- 손금불산입·퇴직연금·15,000,000·유보
- 손금산입·퇴직급여충당금·15,000,000·유보

2) 당기 퇴직급여지급을 연금신청시 세무조정

실무상으로는 상기 3. (4)처럼 근로자가 연금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일시금의 지급과 동일한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상기 1)과 동일한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된다.

3)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

① 총급여액은 200,000,000임

② 한도액 : $\text{Min}(\text{ㄱ}, \text{ㄴ}) = 10,000,000$

ㄱ. 총급여액 기준

$$200,000,000 \times 5\% = 10,000,000$$

ㄴ. 추계액 기준

$$\begin{aligned}
& 130,000,000 \times 35\% - (120,000,000 - 72,000,000 - 15,000,000) \\
& = 45,500,000 - 33,000,000 \\
& = 12,500,000
\end{aligned}$$

③ 한도초과액

$$\begin{aligned}
& 40,000,000 - 10,000,000 \\
& = 30,000,000
\end{aligned}$$

④ 세무조정

손금불산입·퇴직급여충당금·30,000,000·유보

4) 퇴직연금에 대한 세무조정

① 한도액

$$\text{추계액 } 130,000,000 - \text{퇴직급여충당금 손금인정액 } 43,000,000$$

주1)

$$- \text{퇴직연금 기 손금산입액 } 57,000,000^{\text{주2)}}$$

$$= 30,000,000$$

$$\begin{aligned}
& \text{주1) } 130,000,000 - (72,000,000 - 15,000,000 + 30,000,000) \\
& = 43,000,000
\end{aligned}$$

주2) $72,000,000 - 15,000,000$
 $= 57,000,000$

② 당기 퇴직연금불입액

운용증가액 8,000,000 + 당기 불입액 13,000,000
 $= 21,000,000$

③ 세무조정

손금산입·퇴직연금 21,000,000·△유보

5)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

과 목	기 초	감 소	증 가	기 말
퇴직급여충당금	72,000,000	15,000,000	30,000,000	87,000,000
퇴 직 연 금	△72,000,000	△15,000,000	△21,000,000	△78,000,000